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8. 11. 25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청주점

목 차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2장 이용계약	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6
제4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7
별 첨1	8
별 첨2	9
별 첨3	10

제1장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제1조 (이용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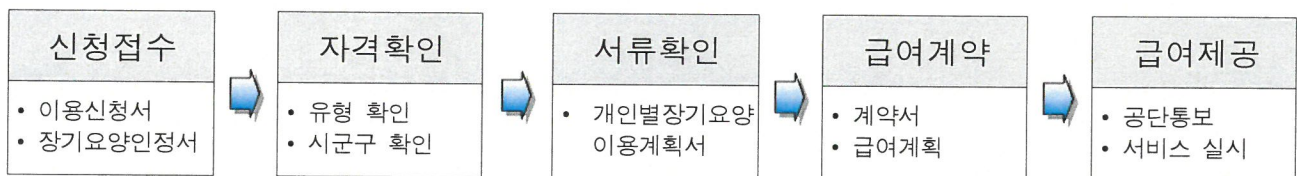
기관의 주야간보호 이용 정원은 62명으로 한다. 수급자 이용 정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표2] 이용절차

제4조 (홍보)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자를 모집한다.

수급자	홍보방법
온라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
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수급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제도홍보와 사용절차 안내

[표3] 모집방법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6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법 40조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하며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한다.
2. 비급여 이용료는 식비 1식당 2,500원(중·석식), 1,100원(조식 죽), 간식비 1일 1,000원(2회 제공)으로 하며, 이미용비는 외부 미용실 이용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등급외자 이용료는 1일 20,000원(식대, 병원비 등 실비는 사용액 그대로 청구)으로 한다.
3.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보유질병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타 수급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경우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1조 (이용료)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5. 비급여 이용료는 식비 1식당 2,500원(중·석식), 1,100원(조식 죽), 간식비 1,000원(오전·오후), 이미용비는 외부 미용실 이용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적용한다
6. 등급외자 이용료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할 수 있으며, 일비 20,000원(식대, 병원비 등 실비는 사용액 그대로 청구)으로 한다.
7. 그 외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한 이용료는 100% 자기부담으로 진행한다.

제1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 ④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정한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제13조(서비스)

1.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방문요양, 목욕 :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으로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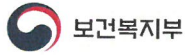
제14조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① 신체활동지원
 - ② 일상생활지원
 - ③ 정서지원
 - ④ 인지활동지원
 - ⑤ 여가활동지원
 -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3. 수급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5조(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

1. 수급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표준계약서에 작성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별첨2]



[2025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2025년 급여비용 안내]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6시간 미만	1등급	40,650	6,098
	2등급	37,630	5,645
	3등급	34,740	5,211
	4등급	33,160	4,974
	5등급, 인지지원등급	31,580	4,737
6시간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4,490	8,174
	2등급	50,470	7,571
	3등급	46,590	4,989
	4등급	45,000	6,750
	5등급, 인지지원등급	43,400	6,510
8시간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0,166
	2등급	62,780	9,417
	3등급	57,960	8,694
	4등급	56,380	8,457
	5등급,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10시간이상~13시간 이하	1등급	74,660	11,199
	2등급	69,160	10,374
	3등급	63,900	9,585
	4등급	62,290	9,344
	5등급	60,710	9,10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12,009
	2등급	74,170	11,126
	3등급	68,520	10,278
	4등급	66,930	10,040
	5등급	65,350	9,803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1회	2,500
아침(죽식)	1,100
간식비	1,000
등급외자	1일 20,000원 이내